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장정희 의원)

의안 번호	23-40
----------	-------

발의년월일 : 2023. 3. .

발 의 자 :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1. 제정이유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안 제2조)
- 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 1)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3. 17. ~ 3.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장(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

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2021.1.12> [전문개정 2011.8.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무과 지출팀 최은희
연 락 처	02-3153-8634